



■■■ KIEM REPORT - 분석

9개년 법정경비의 동향

사회보험 요율 변동이 위탁 원가에 미친 영향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측정의 대상

2017~2025년 적용 요율 9개
회차

위탁 원가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 **법정경비**임.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탁 대가 산정에서 임의로 빼거나 낮출 수 없고, 인건비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늘어나는 성질이 있음.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수록한 **2017~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 9개 회차**를 이어 붙여 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용자 부담분 합계는 보수의 8.6604%에서 9.6541%로 9년간 0.99% 포인트** 높아졌음. 비율로는 **11.5%** 증가임. 같은 인건비를 쓰는 위탁사무라면 법정경비만으로 원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임.

보험별로는 궤적이 다름. **국민연금**은 **4.5%로 9년 내내 변동이 없었고**, 증가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3.060% → 3.545%)과 **노인장기요양보험**(0.2004% → 0.4591%)에서 나왔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두 차례 인상되어 0.65%에서 0.90%가 되었음.

법정경비가 위탁 실무에서 갖는 특성은 **재량이 없다는 점**임. 인건비는 배치 계획으로, 경비는 사업 설계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나, 법정경비는 인건비가 정해지는 순간 요율을 곱해 자동으로 정해짐. 그러므로 이 항목에서 생기는 다툼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계산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며, 9개년 자료를 이어 붙여 본 이유도 그 계산에 쓰이는 값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확인하려는 데 있음.

이 보고서는 9개년 요율을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량과 보험별 궤적을 측정하고, **산재보험료율의 업종별 편차와 시계열이 끊기는 두 구간**을 확인한 뒤, 원가 산정 실무의 점검 항목으로 정리한 것임. 요율은 공표된 값이므로 측정 자체에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부과기준과 사업종류가 도중에 바뀐 해가 있어 **그대로 이어 붙이면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지점**이 있음. 그 두 지점을 따로 다루었음.

사용자 부담 ('17)	사용자 부담 ('25)	9년 누적 증가	국민연금 변동
8.66%	9.65%	+0.99%p	0.00%p

보고서 핵심

법정경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임. 요율이 법령과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무의 과제는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맞는 요율을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임. 9개년 측정에서 확인된 위험은 셋임 — ① 근로자 부담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 ② 산재보험료율을 **업종 확인 없이** 하나의 값으로 쓰는 것 ③ 부과기준이나 사업종류가 바뀐 해를 **그대로 이어 붙여** 비교하는 것임.

I. 법정경비의 위치

01 원가 규범에서의 자리매김

경비의 세비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을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함.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이 가운데 **경비**에 들어가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경비의 세비목으로 **「그 밖의 법정경비」**를 두고 이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

정의에 「의무적」이 들어 있다는 점이 이 항목의 성격을 정함. 다른 경비는 사업의 설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여지가 있으나, 법정경비는 **인건비가 정해지면 요율을 곱해 자동으로 정해짐**. 위탁 대가를 낮추려는 압력이 있을 때 이 항목을 덜어내면 법령 위반이 되므로, 실무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의 대상**임.

표 1. 다섯 보험의 근거 법령

구분	근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본인인,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사용자가 전액 부담 하며 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자료: 각 법령의 부담 주체 조항을 본 연구소가 정리

다섯 가운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넷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함. 이 차이가 다음 절에서 다루는 계상의 문제로 이어짐.

요율을 정하는 형식도 보험마다 다름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대통령령**, 고용보험은 **법률과 시행령**,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임. 개정 절차가 다르므로 바뀌는 주기도 다름.

I. 법정경비의 위치 (계속)

02 사용자 부담분의 계상

이중 계상의 방지

각 보험의 부담 구조

원가계산에서 인건비에 더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분**뿐임.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인건비 안에 이미 들어 있고**, 이를 다시 경비로 잡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게 됨. 9개년 요율을 그대로 더해 원가에 반영하면 실제 부담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산출되므로, 이 구분이 법정경비 계산의 출발점임.

표 2. 부담 구조와 원가 반영 (2025년 적용 요율 기준)

구분	합계	근로자	사용자	원가 반영
국민연금	9.0000%	4.5000%	4.5000%	사용자분만
건강보험	7.0900%	3.5450%	3.5450%	사용자분만
노인장기요양	0.9182%	0.4591%	0.4591%	사용자분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00%	0.9000%	0.9000%	사용자분만
고용보험 (고용안정 등)	0.2500%	—	0.2500%	전액 — 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업종별	—	업종별	전액 — 업종별 상이

자료: 2025년 적용 요율,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임

표의 「사용자」 열을 더한 값이 원가에 반영되는 법정경비의 기본형임.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액 보수자의 경우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지고,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실제 부담액이 표의 요율보다 낮아질 수 있음.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이 보고서의 합계는 **기본형이지 상한이 아님**.

표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더하면 **9.6541%**가 되며,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이 더해짐. 산재보험이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이라면 0.8%가 더해져 **10.45% 안팎**이 됨. 인건비 1억 원을 계상한 위탁사무라면 법정경비는 약 1,045만 원이 되는 크기임.

I. 법정경비의 위치 (계속)

03 계상 오류의 두 방향

과다와 과소

본 연구소 정리

이중 계상은 원가계산서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오류임. 「4대보험료」라는 한 줄로 계상하고 그 옆에 합계 요율을 적어 두면 형식상 어색한 데가 없기 때문임. 확인하는 방법은 **산출근거에 적힌 요율이 합계인지 사용자분인지를 대조하는 것**이며, 2025년을 예로 들면 합계는 약 19%대, 사용자분은 9.65%(산재 제외)이므로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남.

반대로 **덜 계상되는 경우도** 있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액 사용자 부담인데 실업급여와 묶어 절반만 계상하거나, 산재보험료를 업종 요율만 적고 **출퇴근재해 요율을 빠뜨리는** 사례임. 두 방향의 오류가 모두 가능하므로, 항목별로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표 3. 계상 오류가 생기기 쉬운 지점

구분	사례	확인 방법
과다	합계 요율을 그대로 곱함	산출근거의 요율이 합계인지 사용자분인지 대조 — 2025년이면 약 19%대와 9.65%의 차이
과다	근로자 부담분을 경비로 다시 계상	인건비 산출이 세전 보수 기준인지 확인 — 세전 기준이면 근로자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음
과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절반만 계상	전액 사용자 부담 항목임을 확인
과소	출퇴근재해 요율을 빠뜨림	업종 요율에 더하여 별도로 부과되는지 확인
과소	고용보험 규모 구간을 낮게 적용	법인 전체의 국내 사업 인원을 합산하여 구간 확인

자료: 각 보험의 부담 구조를 근거로 본 연구소가 정리

둘째 유형은 인건비 산출의 기준과 맞물려 있음. 인건비를 **세전 보수**로 잡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이미 그 안에 있으므로 경비에 다시 넣을 수 없음. 어느 기준을 썼는지가 산출근거에 없으면 **판정할 수 없음**.

다섯 유형 가운데 금액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첫째와 둘째임. 두 경우 모두 **법정경비가 실제 부담의 두 배 가까이 계상**되므로, 위탁금 전체가 부풀게 됨. 나머지 셋은 방향이 반대여서 수탁기관이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

II. 9개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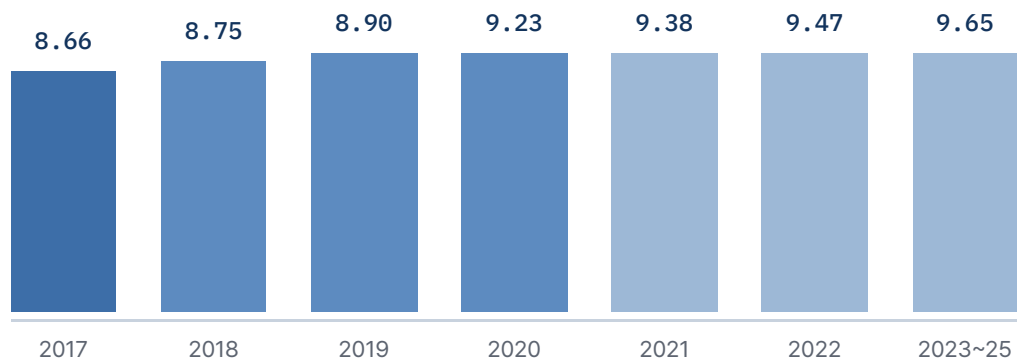
04 사용자 부담 총량의 추이

총량의 측정

2017~2025년 적용 요율을 본 연구소가 환산

9개 회차의 요율을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환산하여 더한 값임.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하나의 값으로 더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 (0.25%)으로 계산하였음.

그림 1. 사용자 부담 합계의 추이 (% , 산재 제외)



자료: 자료실 수록 2017~2025년 적용 요율을 본 연구소가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환산. 2023~2025년은 9.6491~9.6541~9.6541%로 사실상 동일하여 한 칸으로 묶었음

추이에서 두 가지가 확인됨. 첫째, **상승이 한 해에 물리지 아니하고 9년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음** — 해마다 0.1~0.3%포인트씩 오르는 방식이어서 단년도로는 눈에 띄지 아니하나 누적으로는 11.5%가 되었음. 둘째, **2023년 이후로는 사실상 멈추어 있음** — 2023년 9.6491%, 2024년과 2025년 9.6541%로 세 해가 거의 같음.

이 형태는 위탁계약의 기간과 겹쳐 볼 필요가 있음. 3~5년 단위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에 **상승 구간이 들어 있는지 정체 구간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요율 변동의 영향이 크게 달라짐. 2017년에 5년 계약을 맺었다면 만료 시점의 요율은 0.8%포인트 이상 높아져 있었고, 2022년에 맺었다면 0.2%포인트에 못 미침.

총량이 9년간 **한 번도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확인됨. 개별 항목에서는 출퇴근재해 요율처럼 내린 것이 있으나, 사용자 부담 합계는 해마다 같거나 올랐음. 법정경비를 **계약 기간 내내 고정된 값**으로 두는 산정 방식이 수탁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임.

다만 이 측정은 **요율만의 변화**임. 실제 부담액은 요율에 보수 총액을 곱한 값이므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공표 노임단가가 오른 폭까지 겹쳐 보아야 원가에 미친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음. 요율이 11.5% 오르는 사이 인건비도 올랐다면 법정경비의 **절대 금액은 그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을 것임.

II. 9개년 추정 (계속)

05 보험별 구성의 연도표

9개년 전체 값

사용자 부담 기준 환산

앞의 총량을 보험별로 나누어 적은 것임. 각 값은 **사용자 부담분**이며 보수에 곱하는 비율임.

표 4. 사용자 부담분의 연도별 구성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고용안정	합계
2017	4.500	3.060	0.2004	0.650	0.250	8.6604
2018	4.500	3.120	0.2303	0.650	0.250	8.7503
2019	4.500	3.230	0.2749	0.650	0.250	8.9049
2020	4.500	3.335	0.3418	0.800	0.250	9.2268
2021	4.500	3.430	0.3951	0.800	0.250	9.3751
2022	4.500	3.495	0.4288	0.800	0.250	9.4738
2023	4.500	3.545	0.4541	0.900	0.250	9.6491
2024	4.500	3.545	0.4591	0.900	0.250	9.6541
2025	4.500	3.545	0.4591	0.900	0.250	9.6541

자료: 같음. 장기요양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의 비율, 2023년부터 소득의 비율로 부과기준이 달라 환산하여 실었음(06 참조)

표를 세로로 읽으면 보험별 성격이 드러남 — **국민연금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9년 내내 한 값**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해마다 움직였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두 해에만 단속적으로 인상되었음. 세 가지 형태가 한 표 안에 있음.

고정된 두 항목의 합이 4.75%로 **총량의 절반**에 가깝다는 점은 실무에 뜻하는 바가 있음. 법정경비 전체가 해마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절반뿐**이며, 그 절반 안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대부분을 차지함. 요율 변동을 계약에 반영하는 조항을 둘 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음.

해마다의 변동 폭은 크지 아니함 — 가장 크게 오른 해가 2020년으로 0.32%포인트임. 한 해로는 작으나 **계약 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됨.

II. 9개년 측정 (계속)

0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움직이지 않은 항목

국민연금

가장 큰 항목인 국민연금이 9년 내내 변동이 없었음. 사용자 부담분 4.5%(합계 9%)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법정경비 합계 9.65%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 포인트가 고정된 값임. 총량이 늘어난 원인은 국민연금 밖에 있음.

요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부담액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보수가 오르면 부담액도 함께 오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해마다 조정되므로 고액 보수자의 실제 부담은 요율만으로 계산한 값과 달라짐. 요율의 불변은 계산의 안정을 뜻할 뿐 금액의 불변을 뜻하지 아니함.

증가의 주된 원인

건강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합계 기준 6.12%에서 7.09%로 9년간 0.97%포인트 올랐음. 사용자 부담분으로는 3.060%에서 3.545%가 되어 0.485%포인트 증가이며, 이는 같은 기간 법정경비 총량 증가분 0.99%포인트의 약 절반에 해당함.

건강보험 요율의 인상이 법정경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임. 요율 자체가 사용자 부담분을 늘리는 것이 하나이고, 2022년까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므로 건강보험이 오르면 장기요양도 함께 올랐던 것이 다른 하나임. 9년간 두 보험의 증가분을 더하면 0.744%포인트로, 총 증가분의 4분의 3을 차지함.

표 5. 건강보험 요율의 추이 (합계 기준,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25
요율	6.12	6.24	6.46	6.67	6.86	6.99	7.09
전년 대비	—	+0.12	+0.22	+0.21	+0.19	+0.13	+0.10

자료: 자료실 수록 연도별 적용 요율. 2023~2025년은 7.09%로 동일

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은 2019~2021년의 상승 폭이 크고 그 뒤로 완만해졌다는 점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7.09%로 세 해 동안 동결되었음. 위탁계약이 3~5년 단위로 체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에 요율이 오르는 해가 들어 있는지가 원가의 실질에 영향을 줌. 장기 계약에서 법정경비를 계약 첫해의 요율로 고정하면 뒤의 해에 수탁기관이 차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차별 갱신 조항의 유무가 실무의 쟁점이 됨.

II. 9개년 측정 (계속)

07 계약 시점에 따른 차이

다년 계약의 부담

표 4를 5년 구간으로 대조

요율의 상승이 실제 부담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다년 계약의 후반 연차임**. 위탁금이 계약 기간 내에 고정되어 있으면 인상분은 수탁기관이 안게 되므로, 체결 시점에 따라 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6. 계약 시점별 만료 시 요율 차이 (5년 계약 가정, 사용자 부담 합계)

구분	계약 첫째	5년째	차이
2017년 체결	8.6604%	9.3751%	+0.715%p
2018년 체결	8.7503%	9.4738%	+0.724%p
2019년 체결	8.9049%	9.6491%	+0.744%p
2021년 체결	9.3751%	9.6541%	+0.279%p

자료: 표 4의 연도별 합계를 본 연구소가 5년 구간으로 대조. 2021년 체결분의 5년째는 2025년임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체결 시점에 따라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는 점임. 2017~2019년에 체결된 5년 계약은 만료 시점에 0.7%포인트 이상 높아진 요율을 부담하게 되고, 2021년 체결분은 0.28%포인트에 그침. 같은 조건의 계약이라도 **언제 맺었는가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임.

이 차이를 계약에서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됨 — **연차별로 요율을 다시 적용하여 위탁금을 조정**하는 방식과, 법정경비를 **실비 정산 항목**으로 두어 실제 납부액으로 사후에 맞추는 방식임.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며, 조항이 없으면 요율 인상분이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남게 됨.

두 방식은 검증의 부담이 다름. **연차별 조정**은 해마다 요율을 다시 확인하여 위탁금을 고쳐야 하므로 절차가 반복되나 금액이 예측 가능하고, **실비 정산**은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나 정산 시점에 납부 증빙을 갖추어야 함. 위탁 기간이 길고 인원 변동이 잦은 사무라면 후자가, 인원이 고정된 사무라면 전자가 다루기 쉬운 편임.

어느 방식을 쓰든 전제가 되는 것은 **법정경비를 별도 비목으로 계상해 두는 일임**. 인건비에 포함하여 총액으로만 적어 두면 조정할 대상도 정산할 대상도 특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II. 9개년 측정 (계속)

08 장기요양보험과 부과기준의 변경

가장 가파른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9년간 **비율로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임. 사용자 부담분이 0.2004%에서 0.4591%로 **2.3배**가 되었음. 금액의 크기는 작으나 증가분 0.2587%포인트는 총량 증가분 0.99%포인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

집계 전 확인 사항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로, **2023년부터 「소득의 몇 퍼센트」**로 부과기준이 바뀌었음. 표기된 숫자만 이어 붙이면 2022년 **12.27**에서 2023년 **0.9082**로 급감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기준이 달라진 표기의 변화**이지 요율의 인하가 아님.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12.27%에서 12.81%로 올랐음.

표 7.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두 표기

구분	부과기준	고시된 값	건강보험료 대비 환산
2017	건강보험료	6.55%	6.55%
2019	건강보험료	8.51%	8.51%
2021	건강보험료	11.52%	11.52%
2022	건강보험료	12.27%	12.27%
2023	소득	0.9082%	12.81%
2024~25	소득	0.9182%	12.95%

자료: 자료실 수록 연도별 적용 요율. 환산값은 각 연도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본 연구소가 계산

이 사례는 요율 자료를 여러 해에 걸쳐 비교할 때 **표기 방식이 도중에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줌. 원가계산서를 연차별로 대조할 때에도 같은 확인이 필요하며, 과거 산출서의 장기요양 항목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혀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환산한 뒤 비교하여야 함.

II. 9개년 측정 (계속)

09 고용보험의 두 갈래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가지로 나뉨.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9년간 합계 **1.3%에서 1.8%**로 두 차례 인상되었음 — 2020년에 1.6%, 2023년에 1.8%가 되었음. 사용자 부담분으로는 0.65%에서 0.90%로 **0.25%포인트 증가**이며, 이는 총량 증가분의 약 4분의 1임.

규모에 따른 네 구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요율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뉨. 이 보고서의 총량 계산은 150명 미만 기준(0.25%)을 썼으나, 실제 적용은 수탁기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표 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구분	요율	부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전액 사용자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전액 사용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0.65%	전액 사용자
1,000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0.85%	전액 사용자

자료: 2025년 적용 요율.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사용자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산하여 셈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범위**임. 그 사용자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산하므로, 해당 위탁 사업장의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구간을 잘못 잡을 수 있음.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대체로 150명 미만이어서 0.25%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시설을 함께 수탁한 법인**이라면 합산 인원이 구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이는 0.60%포인트로, 9년간의 총량 증가분(0.99%포인트)에 견줄 만한 크기임.

네 번째 구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인원과 무관하게 들어가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은 0.85%가 적용되는 데 견주어, 같은 사무를 150명 미만 법인이 수탁하면 0.25%가 적용되어 0.60%포인트가 낮아짐. 다만 이 차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 구조에 따른 것이고 위탁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임.

III. 산재보험료율

10 업종에 따른 편차

하나의 값으로 쓸 수 없는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하며 전액 사용자가 부담함. 단위는 **천분율(%)**임. 앞의 총량 계산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것은 업종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 하나의 수치로 더할 수 없기 때문임.

표 9. 위탁 실무와 관련이 큰 업종의 요율 (2025년, %)

구분	요율	비고
건설업	35	시설 공사가 포함되는 위탁
임업	58	산림 관리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직영에 준하는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시설 위탁운영의 다수
기타의 각종사업	8	분류가 어려운 사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복지관·도서관·체육시설 등
금융 및 보험업	5	전 업종 중 최저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발령) 별지 요율표에서 위탁 관련 업종을 본 연구소가 발췌
표의 범위만 보아도 **5%에서 58%까지 열 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 보수의 비율로 환산하면 0.5%에서 5.8%로, 앞서 측정한 법정경비 총량 9.65%에 견주어 **업종 하나로 원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크기**임. 같은 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원가계산서에는 그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과 요율을 적어야 함.

업종별 요율에 더하여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부과됨. 2025년은 0.6%임.

업종의 판단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따름.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는 고용노동부 「사업종류 예시표」를 따르므로 산정 단계에서 그 예시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실무에서 확인이 쉬운 방법은 **수탁기관의 산재보험 성립신고상 사업종류**를 대조하는 것임. 원가계산서에 적은 업종과 실제 신고된 업종이 다르면 산정액과 납부액이 어긋남.

III. 산재보험료율 (계속)

11 시계열이 끊기는 두 구간

사업종류의 개편

2020년 고시

산재보험료율을 9년에 걸쳐 비교할 때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없는 구간**이 두 곳 있음. 첫째는 **2020년의 사업종류 개편**임. 「기타의 사업」 아래의 세부 분류가 2019년까지 열 갈래였다가 2020년부터 여섯 갈래로 통합되었음.

표 10. 「기타의 사업」 세부 분류의 개편

구분	세부 분류
2019년까지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기타의 각종사업 / 전문기술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교육서비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사업서비스업
2020년부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의 각종사업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도소매·음식·숙박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자료: 2019년·2020년 적용 고시의 별지 요율표를 본 연구소가 대조

개편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합쳐졌고**,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정리되었음. 따라서 2017년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과 2025년의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을 **같은 항목의 변화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요율이 절반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포괄 범위가 다른 항목이기 때문임.

출퇴근재해의 신설

2018년 고시

둘째 구간은 **출퇴근재해 요율**임. 2017년도 고시에는 이 항목이 없었고 **2018년도 고시부터 신설**되었음. 신설 이후에는 1.5%에서 시작하여 2020년 1.3%, 2021년 1.0%, 2024년 0.6%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음. 법정경비 항목 가운데 9년간 요율이 내려간 드문 사례임.

두 사정이 실무에 뜻하는 바는 같음 — **과거의 원가계산서를 현재의 기준으로 읽어서는 아니 됨**. 2017년 산출서에 출퇴근재해 항목이 없다고 하여 누락으로 볼 수 없고, 2019년 이전의 업종 명칭이 지금과 다르다고 하여 오기로 볼 수 없음. 과거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그 시점의 고시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함.

같은 이유로 9개년 요율 자료를 과거 계약의 검증에 쓸 때에도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함. 그 계약이 체결된 해의 고시가 어떤 사업종류 체계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되는 항목끼리** 견주어야 함.

IV. 원가에 미치는 영향

12 증가분의 크기

두 가지 상승의 겹침

본 연구소 정리

법정경비는 **인건비에 요율을 곱해 산출**되므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갈래가 겹쳐 나타남 — **요율 자체의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임. 9년간 요율이 8.6604%에서 9.6541%로 올랐으므로, 인건비가 그대로였다면 법정경비는 **11.5% 늘어남**. 인건비가 함께 올랐다면 증가는 두 요인의 곱으로 나타남.

표 11. 증가분의 보험별 기여

구분	2017 → 2025	증가분	총 증가분에서의 비중
건강보험	3.060 → 3.545	+0.485%p	48.8%
고용보험	0.650 → 0.900	+0.250%p	25.2%
장기요양	0.2004 → 0.4591	+0.259%p	26.0%
국민연금	4.500 → 4.500	0.000%p	0.0%
고용안정 등	0.250 → 0.250	0.000%p	0.0%
합계	8.6604 → 9.6541	+0.994%p	100.0%

자료: 표 3을 본 연구소가 재정리. 비중은 각 증가분을 총 증가분으로 나눈 값임

증가분의 **4분의 3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에서 나왔음. 두 보험은 부과기준이 함께 움직이는 관계에 있었으므로(2022년까지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됨) 건강보험 요율의 인상이 장기요양 부담까지 끌어올리는 구조였음. 2023년 부과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서 이 연동은 끊어졌음.

장기 위탁계약에서 실무의 관심은 이 증가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있음. 위탁금이 계약 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으면 요율 인상분은 수탁기관이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인력 운영에 영향을 줌. 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다룬 앞선 보고서(**KIEM-REPO-2021-01**)에서 확인한 구조와 이어지는 대목임.

9년간 늘어난 0.99%포인트는 **보수 총액의 1% 남짓**이나, 법정경비 항목 안에서는 **11.5%의 증가**임.

IV. 원가에 미치는 영향 (계속)

13 산정 실무의 점검 항목

일급 가지

각 보험의 근거 법령과 고시를
본 연구소가 정리

표 12. 법정경비 산정에서 확인할 항목

순번	항목	내용
1	사용자 부담분	인건비에 더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분뿐임.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인건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산재 업종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 하나의 값으로 쓸 수 없음.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을 확인하고 그 요율을 적어야 하며,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동일하게 더해짐
3	고용보험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임. 그 수는 사용자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하여 셈
4	적용 시점	요율은 연중에 바뀌기도 함. 고시·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맞는 요율 을 적용하여야 함
5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음. 고액 보수자는 요율을 곱한 값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짐
6	부가 부담금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과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장이 있음
7	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이 낮아질 수 있음

자료: 각 보험의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본 연구소가 정리

일급 항목 가운데 산출 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1번과 2번**임. 1번을 놓치면 법정경비가 두 배 가까이 계상되고, 2번을 놓치면 업종에 따라 수 퍼센트포인트가 어긋남. 4번은 다년 계약에서, 3번은 여러 시설을 수탁한 법인에서 문제가 되기 쉬움.

다섯째와 일곱째 항목은 산정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성질임 — 상한·하한과 보험료 지원은 개별 근로자의 보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정에서는 표준 요율로 계상하고 **실제 차이는 정산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 맞음. 그 조정의 근거를 협약에 두어야 함.

V. 정산과 검증

14 산정 이후의 취급

정산의 성격

본 연구소 정리

법정경비는 산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산에서 다시 확인되는 항목**임.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산정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요율이 아니라 **인원과 보수의 변동**에 있음 — 결원이 생겨 실제 보수 총액이 계획에 못 미치면 법정경비도 그만큼 덜 납부되며, 그 차액의 처리 방법이 협약에 정해져 있어야 함.

표 13. 정산에서 확인되는 자료

구분	내용
보험료 납부 증빙	각 보험의 납부 확인서 — 산정 시 계상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의 대조
적용 업종	산재보험 성립신고상의 사업종류 — 원가계산서에 적은 업종과 일치하는지 확인
인원 변동	계약 기간 중의 입·퇴사 내역 — 보수 총액의 변동이 법정경비에 그대로 반영됨
요율 변경	계약 기간 중 요율이 바뀐 경우 그 시점과 적용 여부

자료: 본 연구소가 정리

산정 단계에서 **비목을 구분하여 적어 두는 것**이 정산의 전제가 됨. 위탁금의 회계 처리는 **KIEM-REPO-2024-01**에서, 원가 산정의 일반 구조는 **KIEM-REPO-2023-01**에서 각각 다루었음.

정리하면 법정경비는 **계산이 단순한 대신 확인할 것이 많은 항목**임. 요율은 공표되어 있어 다룰 여지가 없으나, 어느 요율을 어느 범위에 곱할 것인지에서 차이가 생기며 그 차이가 9개년 요율 상승분보다 클 수 있음.

차이의 크기를 견주어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짐. 9년간의 요율 상승분은 **0.99%포인트**인 데 견주어, 산재보험 업종을 잘못 적으면 **수 퍼센트포인트**가, 고용보험 규모 구간을 잘못 잡으면 **0.60%포인트**가, 근로자 부담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면 **9%포인트 이상**이 어긋남. **적용의 오류가 9년간의 제도 변화보다 큰 금액을 만드는 구조**임.

그러므로 법정경비에서 실수가 들일 노력은 **적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요율은 공표되어 확인이 어렵지 아니하나, 업종·규모·부담 주체·적용 시점의 판단은 사무마다 달라 **산정할 때마다 새로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임.

근거와 한계

인용한 자료

표 14. 이 보고서가 대조한 자료

구분	내용
연도별 적용 요율	본 연구소 자료실 수록 2017~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 9개 회차 — 각 회차는 해당 연도의 근거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2025년 적용분은 제2024-77호(2024. 12. 30. 발령)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와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와 시행령 제12조·제13조
원가 반영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경비의 세비목 중 「그 밖의 법정경비」

연도별 요율의 원문 근거는 자료실의 각 연도 게시물에 수록하였음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2025년 3월까지 공표된 요율 기준임. **사용자 부담 합계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값**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0.25%)**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규모가 다르면 합계가 달라짐. 장기요양보험의 연도별 비교는 부과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으므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여** 실었고, 그 환산은 각 연도 건강보험료율을 쓴 본 연구소의 계산임. 상한·하한, 보험료 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등은 **합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은 위탁과 관련이 큰 업종만 발체한 것으로 전체 요율표가 아니며, 2020년 사업종류 개편으로 **개편 전후의 항목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아니함**. 요율은 원가 산정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이 보고서의 수치가 특정 위탁사무의 실제 부담액을 뜻하지 아니함.

함께 볼 자료

원가 산정의 일반 구조는 **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KIEM-REPO-2023-01), 위탁금의 회계 처리는 **위탁금의 회계**(KIEM-REPO-2024-01), 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KIEM-REPO-2021-01)에서 각각 다루었음.

문의

내용의 문의는 **한국관리위탁연구소**로 하시기 바람.